# 이집트 (Egypt)

###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고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	-
보험료율 (근로자/사용자)	25% (10% / 15%)	25% (10% / 15%)	-
보험료 부과 상한 / 하한 소득	3,800 / 500 pound	5,710 / 781.25 pound	상/하한 소득 ↑
노령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60세	가입기간 10년, 60세	-
노령연금 지급율(40년 기준)	80%	80%	-
최대 / 최소 연금액	3,040 / 500 pound	4,568 / 500 pound	최대 연금액↑
일시금	월 참조소득 x 12 x 가입연수 x 15%	월 참조소득 x 12 x 가입연수 x 15%	-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50년(사회부조), 1955년(적립 및 보험금고)

○ 현행법: 1975년(공무원,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1976년(자영자), 1978년(이주 근로자),

1980년(가입 확대), 1980년(대체 보험)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자산조사 급여는 가족수당(Familly Allowances)에 따라 특정 노인, 장애인, 유족에게 지급됨

#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근로자(양자협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

○ 특별제도 : 자영자, 해외에서 근로하는 이집트 국민(임의가입), 임시근로자, 가사근로자 및 군인

# 4 재원조달

### ○ 가입자

- 월 가입소득의 10% + 일시금에 대한 월 기본소득의 3%
- 월 가입소득은 가입자의 기본소득 및 가변소득임. 상여금, 성과급, 수수료, 이익 분배금과 같

은 보상 형태의 소득은 기본소득에서 제외됨. 2019년 7월 기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기본소득은 월 1,670 pounds이며 매년 7월마다 10% 씩 인상됨. 가변소득은 상여금, 성과급, 수수료, 이익 분배금과 같은 모든 보상 형태의 소득을 포함함. 2019년 1월 기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가변소득은 월 4,040 pound임

-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 소득은 공무원 급여 하한선이며 공무원 급여 하한선은 2019년 7월 기준 781.25 pound임(매년 7월마다 10% 씩 인상)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은 2019년 7월 기준 5,710 pounds
- 자영자 : 해당 없음
- 사용자
  - 월 가입임금총액의 15% + 일시금에 대한 월 기본임금총액의 2%
  - 특정 분야의 위험·힘든 직종의 경우 더 납부함
  - 월 가입소득은 가입자의 기본소득+가변소득임. 상여금, 성과급, 수수료, 이익 분배금과 같은 보상 형태의 소득은 기본소득에서 제외됨.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월 기본소득은 2019년 7월 기준 1,670 pound이며 매년 7월마다 10% 씩 인상됨. 가변소득은 상여금, 성과급, 수수료, 이익 분배금과 같은 모든 보상 형태의 소득을 포함함.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월 가변소득은 2019년 1월 기준 4,040 pound임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소 월 소득은 공무원 급여 하한선이며 공무원 급여 하한선은 2019년 7월 기준 781.25 pound임(매년 7월 25%씩 인상됨)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월 가입소득 : 5,710 pound
- 정부 : 월 가입소득(특별 인상 및 사회연대수당)의 1%, 결손금 충당하고 사용자로서 기여

#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 기본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기본연금만 수급 가능함. 가변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기본연금과 가변연금 모두 수급 가능함. 기본소득은 상여금, 성과급, 수수료, 이익 분배금과 같은 보상 형태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며 가변소득은 상여금, 성과급, 수수료, 이익 분배금과 같은 모든 보상 형태의 소득을 포함함
- 노령연금
  - 노령연금(기본소득과 가변소득)
    -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0세 도달자
    - 특정 위험하거나 힘든 직종 근로자들의 경우 연령 조건이 낮아짐
    - 조기연금 : 24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연령 제한 없음)
    - 특정 상황에서는 계속 근로 가능
    - 근로퇴직급여 : 가입자가 노령연금 처음 수급할 때 지급
    - 추가 납부기간에 대한 특별수당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36년 이상인 경우 지급
    - 특별증액 :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급

- 사회연대수당 :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급
- 노령청산금
  - 60세에 도달했으나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국외 이주자(연령 제한 없음)
  -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51세 이상인 여성(기혼, 이혼 또는 사별)

## ○ 장애연금(기본소득과 가변소득)

- 장애연금
  - 정상퇴직연령 미만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영구적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야 하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또는 총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 했어야 함. 가입 중 또는 고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장애만 해당됨; 고용종료 후 1년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퇴직급여 : 가입자가 장애연금을 처음 수급할 때 지급
  - 보충급여 : 가입자가 장애연금 수급 시 지급
  - 특별증액 : 가입자가 장애연금 수급 시 지급
  - 사회연대수당 : 가입자가 장애연금 수급 시 지급
  - 상시간병보조수당 : 가입자의 일상 활동에 타인의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의학위원회에서 장애정도를 평가함
- 장애청산금
  - 가입자가 완전장애로 판정받았으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 근로퇴직급여 : 가입자가 장애청산금을 수급할 때 지급
  - 보충급여 : 가입자가 장애청산금을 수급할 때 지급

### ○ 유족연금

- 유족연금(기본소득과 가변소득)
  - 사망자가 노령/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할 자격이 있었을 경우 지급됨. 또한 사망자가 60세 미만이고 3개월 이상 또는 총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또는 사망 발생 시기가 고용 종료 후 1년 이후로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요건 충족한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배우자; 무소득이고 이전에 사망자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이혼 배우자; 장애가 있는 미망인(홀아비), 21세 미만 아들 (학생은 26세,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미혼인 딸; 부모; 수급 자격이 있는 자녀 부재 시 특정 조건 하에 피부양 형제·자매
  - 근로퇴직급여 : 유족이 처음 연금 수급할 때 지급
  - 보충급여 : 유족연금 수급 시 지급
  - 특별증액 : 유족연금 수급 시 지급
  - 사회연대수당 : 유족연금 수급 시 지급
- 유족청산금
  - 사망자가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급 가능한 유족 또는 법적 상속인 에게 지급
  - 근로퇴직급여 : 유족청산금 수급 시 지급

- 보조급여 : 유족청산금 수급 시 지급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지정된 유족에게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우선순위대로) 피부양 미망인 또는 장애가 있는 홀아비; 21세 미만의 피부양 아들(학생은 26세,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미혼인 피부양 딸; 피부양 부모; 특정 조건 하에 피부양 형제·자매
- 장제비 : 노령/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첫째 자녀에게 지급

#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연금

6

- 기본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연수 1년 당 참조 기본소득월액의 2.2%(힘든 직종 종사기간은 2.5%, 위험 직종 종사기간은 2.8%)까지 산정(최대 36년까지)
  - 참조 기본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5년 동안의 월 평균 기본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참조 기본소득월액은 최종 2년 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납부연수 1년 당 1.1배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최대 월 기본노령연금 :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소득 상한액의 80%(2019년 7월 기준 1,670pound)
  - 조기연금 : 법에 규정된 계리감액상수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됨
  - 근로퇴직급여 : 납부 1년 당 참조 월 기본소득의 1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추가 납부기간에 대한 특별보조금 : 36년을 초과하는 1년 당 참조 기본소득의 15% (소급 납부기간에 대하여는 9%)에 12배를 증액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특별증액 : 기본노령연금의 25% 지급(최대 35 pound, 최저 20 pound)
  - 사회연대수당 : 월 450 pound
  - 급여조정 : 이용 가능한 재원에 따라 급여는 정기적으로 정부에 의해 조정됨
- 가변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연수 1년 당 가입자의 월 참조 가변소득의 2.2%(힘든 직종은 2.5%, 위험 직종은 2.8%)까지 산정
  - 월 참조 가변소득은 총 납부기간 동안의 월 평균 가변소득에 완전 납부한 기간 1년 당 3%씩 가산한 금액(최대 4,040 pound)
  - 조기연금 : 법에 규정된 계리감액상수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됨
  - ※ 최저 총 노령연금액(기본소득+가변소득)은 최종 2년간(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평균소득 (기본소득+가변소득)의 50% 혹은 500 pound 중 큰 금액으로 함 최대 총 노령연금액(기본소득+가변소득)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소득월액(기본소득+가변소득)의 80%임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상한 소득월액은 5,710 pounds 임

#### • 노령청산금

- 납부기간 1년 당 가입자의 총 월 참조소득(기본소득+가변소득)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5%가 일시금으로 지급
- 월 참조 기본소득은 가입자의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5년 동안의 월 평균 기본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2년 전 납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월 참조 기본소득은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납부기간 1년 당 1.1배를 증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월 참조 가변소득은 총 납부기간 동안의 월 평균 가변소득에 완전 납부한 기간 1년 당 3%씩 가산한 금액(최대 4,040 pound)
- 근로퇴직급여 : 참조 월 기본소득의 1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 장애연금

- 기본 장애연금
  - 납부기간 1년 당 가입자의 참조 기본소득의 2.2%(힘든 직종은 2.5%, 위험직종은 2.8%) 까지 산정(최대 36년까지)
  - 월 참조 기본소득은 가입자의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5년 동안의 월 평균 기본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월 참조 기본소득은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납부기간 1년 당 1.1배를 증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최대 월 장애 기본연금액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월 상한 기본소득의 80%임 (월 상한 기본소득 : 1,670 pound)
  - 근로퇴직급여 : 납부기간 1년 당 참조 월 기본소득의 1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최소 급여는 참조 기본소득 10배)
  - 보충급여 : 완전 장애의 경우, 월 참조 기본소득에 연령 계수를 곱한 금액의 12배 지급 (부분장애는 50%까지 감액)
  - 특별증액 : 기본연금의 25% 지급(최소 20 pound, 최대 35 pound)
  - 사회연대수당 : 450 pound
  - 상시간병수당 : 기본 장애연금의 20% 지급

### • 가변 장애연금

- 완전장애의 경우, 납부기간 1년 당 참조 가변소득의 2.2%(힘든 직종은 2.5%, 위험직종은 2.8%)까지 산정
- 월 참조 가변소득은 총 납부기간 동안의 월 평균 가변소득에 완전 납부한 기간 1년 당 3%씩 가산한 금액(최대 4,040 pound)
- 최소 총 연금액(기본소득+가변소득)은 최종 2년간의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평균 소득(기본소득+가변소득)의 65% 또는 월 500 pound, 둘 중 큰 금액으로 함
- 최대 총 연금액(기본소득+가변소득)은 최대 소득월액(기본소득+가변소득)의 80%
- 보충급여 : 영구장애인 경우, 장애연금액 산정을 위한 월 참조 가변소득에 연령 계수를

곱한 금액의 12배 지급(부분장애인 경우 50%까지 감액)

- 상시간병수당 : 연금액의 20%

### • 장애청산금

- 보험료 납부연수 1년 당 전체 참조소득(기본소득+가변소득)에 12배를 곱한 금액의 15%까지 지급
- 월 참조 기본소득은 가입자의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5년 동안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1.5배를 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월 참조 기본소득은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납부 기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납부연수 1년 당 1.1배를 증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월 참조 가변소득은 총 납부기간 동안의 월 평균 가변소득에 보험료 납부 연도 1년 당 3%씩 가산한 금액(최대 4,040 pound)
- 근로퇴직급여 : 납부기간 1년 당 참조 월 기본소득의 1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보충급여 : 장애연금액 산정을 위한 월 참조소득(기본소득+가변소득)에 연령 계수를 곱한 금액의 12배 지급(부분장애인 경우 50%까지 감액)

### ○ 유족연금

- 기본 유족연금
  - 납부기간 1년 당 참조 기본소득의 2.2%(힘든 직종은 2.5%, 위험직종은 2.8%)까지 산정 (최대 36년까지)
  - 월 참조 기본소득은 가입자의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5년 동안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1.5배에 해당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월 참조 기본소득은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납부기간 1년 당 1.1배를 증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최대 급여액은 최대 기본소득월액의 80%임(최대 기본소득월액 : 1,670pound)
  - 근로퇴직급여 : 납부기간 1년 당 참조 월 기본소득의 1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최소 급여는 참조 기본소득 10배)
  - 보충급여 : 월 참조 기본소득에 연령 계수를 곱한 금액의 12배 지급
  - 특별증액 : 연금액의 25% 지급(최소 20 pound, 최대 35 pound)
  - 사회연대수당 : 월 450 pound 지급

# • 가변 유족연금

- 납부기간 1년 당 참조 가변소득의 2.2%(힘든 직종은 2.5%, 위험직종 종사기간은 2.8%) 산정. 월 참조 가변소득은 총 납부기간 동안의 월 평균 가변소득에 납부기간 1년 당 3%씩 가산한 금액이며 최대 4,040 pound임
- 최소 총 연금액(기본소득+가변소득)은 최종 2년 간의(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평균 소득(기본소득+가변소득)의 65% 또는 500 pound, 둘 중 큰 금액으로 함
- 최대 총 연금액(기본소득+가변소득)은 최대 소득월액(기본소득+가변소득)의 80%이며 최대 기본소득월액은 5,710pound임
- 보충급여 : 월 참조 가변소득에 연령 계수를 곱한 금액의 12배 지급

#### • 유족청산금

- 납부기간 1년 당 전체 참조소득(기본소득+가변소득)에 12배를 곱한 금액의 15%(소급 납부한 기간은 9%)까지 지급
- 월 참조 기본소득은 가입자의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5년 동안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1.5배에 해당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월 참조 기본소득은 최종 2년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 또는 최종 2년 전 납부기간의 월 평균 기본소득에 납부연수 1년 당 1.1배를 증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월 참조 가변소득은 총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의 월 평균 가변소득에 납부기간 1년 당 3%씩 가산한 금액(최대 4,040 pound)
- 근로퇴직급여 : 납부기간 1년 당 참조 기본소득 1개월분 지급(최소 급여액은 참조 기본소득 10개월분)
- 보충급여 : 유족연금액 산정을 위한 월 참조소득(기본소득+가변소득)에 연령 계수를 곱한 금액의 12배 지급
- 사망일시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노령/장애연금액(기본소득+가변소득) 3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장제비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노령/장애연금액(기본소득+가변소득) 2개월분 지급(최소 200 pound)

# 7 관리운영기관

- 사회연대부(Ministry of Social Solidarity)
  - 전반적 감독
  - http://www.moss.gov.eg
- 공공·민간부문 사회보험기금(Public and Private Social Insurance Fund)
  - 제도의 관리 운영
- 정부부문 사회보험기금(Government Social Insurance Fund)
  - 공무원 제도의 관리 운영

<2019년 ISSA 자료>